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46

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 구자근 • 이만희 • 김도읍

인요한 • 한기호 • 김위상

박성민 · 주호영 · 정동만

김석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·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업규모나 신성장·원천기술 여부, 국가전략기술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·인력개발비 및 자산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·인력개발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"을 "금액, 추가공제 금액 및 기타공제 금액을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기타공제 금액: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	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
세액공제) ① 내국인의 연구개	세액공제) ①
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	
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	
(이하 "연구·인력개발비"라 한	
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	
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	
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	
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	
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	
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	
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·	
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	
며,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	
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	
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	
하나만을 적용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
	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
	도에 발생한 연구 · 인력개발
	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
	<u>금액</u>

② ~ ⑥ (생 략)

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 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공제한다.

- 1. (생략)
- 2. 공제금액 가.·나. (생 략) <신 설>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세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
<u>금</u> 액,
추가공제 금액 및 기타공제 금
<u>액을</u>
1. (현행과 같음)
2
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다. 기타공제 금액: 수도권
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
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
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

	의 20에 상당하는 금액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